

대전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나102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나10253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2. 9 선고 2020가합6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이준보, 박종문, 노재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오관후

피고, 피항소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석

변론종결 2022. 7. 13.

판결선고 2022. 9. 2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2. 9. 선고 2020가합6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26,899,8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1심 판결 제8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잔금 대납에 의한 제3자 변제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조건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취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이 된 급부의 실현에 의하여 채권이 만족되어 소멸하는 변제 자체의 효력에 조건을 부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급부의 실현이라 할 잔금 대납행위의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 제출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이 설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제1심 판결 제10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4) 원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조건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절차의 완료가 이 사건 잔금 대납의 효력 발생

조건이라는 취지를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후인 2018. 12. 6. 피고의 담당공무원과 통화하면서 뒤늦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더구나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을 피고가 받아들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잔금 대납이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확인서 제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2018. 12. 14.경에야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회사에 제공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30.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2018. 12. 4. F은행으로부터 채권해당액 지급요청 철회 공문까지 받은 상태에서, 2018. 12.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잔금 대납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를 전제한 것이므로 유상증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확인서와 위 공문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18. 12. 12.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한 후 2018. 12. 14.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잔금 대납이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선준, 판사 이진영, 판사 이선미